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06
----------	-----

2023. 6. 23.(금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6월 12일

-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지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,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(안 제11조)
-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2조의2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
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7조, 제13조, 제15조)

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
- 법은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환승·연계의 문제,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정도의 편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(법 제16조제3항),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됨(법 제16조제9항).
- 이에 따라 우리 도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(안 제11조),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(안 제12조의2)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개정된 법 제16조의 시행일이 '23. 7. 19.인 것을 고려하여 안 제11조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도 부칙으로 '23. 7. 19.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함.
-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3. 6. 2.~'23. 6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참 고

법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 ~ ② (생략)	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 ~ ② (생략)
③ 도지사는 <u>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</u>	③ 도지사는 <u>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·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·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</u>
④ ~ ⑧ (생략)	④ ~ ⑧ (생략)
<신설>	⑨ 시장,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<신설>	⑩ (생략)

[시행일: 2023. 7. 19.] 제16조

4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,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지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0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5월 31일
발의자 : 박지현, 이동우, 김종필,
김호경, 박진희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상위법률 개정 에 따라 의무화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,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(안 제11조)
- 나.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2조의2)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7조, 제13조, 제1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첨부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2023. 6. 2. ~ 6. 8. (의회홈페이지 게시 및 예고)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”을 “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와 같으며,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 중 “한다.)는”을 “한다)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”를 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”로, “자 이하”를 “자(이하”로, “한다.)가”를 “한다)가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”을 “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연계를 통한 이동권 보장을”을 “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·연계를”로, “설치·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설치·운영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위탁)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

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법 제 13조”를 “법 제13조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.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<u>법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와 같으며,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 다음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</u></p>
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.)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시·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</p>	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----- ----- 한다)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7조(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)

① 도지사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이하 “노선버스 운송사업자”라 한다.)가 버스를 구입할 경우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1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

· 운영 등) 도지사는 시·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간 연계를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13조(교육) ① 교통사업자 및

-----.

제7조(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)

① ----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-----

----- 자(이하 -----
----- 한다)가 -----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

및 운영) -----

-----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·연계를 -----

----- 설치·운영한 -----

제12조의2(위탁) 도지사는 광역이

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13조(교육) ① -----

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 13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 법 제13조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관계법령

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(현행) 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~② (생략)

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④~⑧ (생략)

[전문개정 2012. 6. 1.]

(개정) 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~② (생략)

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·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·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1. 18.>

④~⑧ (생략)

⑨ 시장,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1. 18.>

⑩ (생략)

[전문개정 2012. 6. 1.]

[시행일: 2023. 7. 19.] 제16조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에 따라,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·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·연계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추진

2. 비용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·운영비(안 제11조, 제12조)
 -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와 연간 운영비 지원 소요분

3. 관련조문

- 안 제11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안 제12조의2(위탁)

4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
- 충청북도 광역이동 지원센터 설치·운영비(자체사업, 신규)
 - 설치비 : 사무집기 등 사무환경 조성
 - 운영비 : 위탁운영, 인건비(20여명, 3교대, 24시간), 유지관리비 등

나. 추계 결과

-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, 2024년 약 15억원이 소요되고, 향후 5년간 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

다. 재원조달방안

- 2024년 : 자체재원(도비 15억원)
- 2025~2028년 : 기획재정부 복권기금(80억원)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1,5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9,500,000
설치·운영비용 (민간위탁금)	1,5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9,500,000
재원 조달	1,5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9,500,000
도비 일반회계	1,500,000					1,500,000
기 금	-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8,000,000
특별회계	-	-	-	-	-	-
구.군비	-	-	-	-	-	-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-	-	-	-	-	-